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93

발의연월일: 2021. 7. 8.

발 의 자:소병훈・이병훈・안규백

맹성규・오영환・윤관석

고영인 · 최종윤 · 양정숙

신정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사업구역에서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5 층 높이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사고가 발생한 건축물은 해체계획서에 적힌 해체절차와 달리 붕괴위험이 높은 아래층부터 깎아내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해체 현장에서 해체작업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해체공사감리자 또한비상주 감리를 이유로 현장에 부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번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규모 건설 현장에 배치하는 현장관리인의 경우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건축법」의 규정처럼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이탈을 금지하고, 건축물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대로 건축물을 해체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이나 인명 피해 등을 발생시킨 경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음.

이에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에 맞게 건축물을 해체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32조제6항 등).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공사 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해체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해체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벌칙) 제3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 현장을 이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 본문 중 "제51조"를 "제51조, 제51조의2"로 한다.

제5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제3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 현장을 이탈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 |
| 등) ① ~ ⑤ (생 략) |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
| <u><신 설></u> | ⑥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공사 | |
| | 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 |
| | 수행할 때 해체공사 현장을 이 | |
| | 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u>⑥</u> (생 략) |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 |
|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 제51조(벌칙) ① |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 | |
|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 | |
| 의 벌금에 처한다. | |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
| <u><신 설></u> | 9의2.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체 | |
| | 계획서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 | |
| | 물을 해체함으로써 공중의 위 | |
| | 험을 발생하게 한 자 | |
| 10. ~ 12. (생 략) | 10. ~ 12. (현행과 같음)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u><신 설></u> | 제51조의2(벌칙) 제32조제6항을 | |
| | 위반하여 해체공사 현장을 이 | |
| | 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 | |
| | 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 |
| |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
| | <u> 처한다.</u> | |

|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
|---------------------------|
|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
|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
| 여 <u>제51조</u> 및 제52조의 위반행 |
| 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
|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
|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 |
| 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
|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
|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정한 주 |
| 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 |
|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 다. |

제54조(과태료) ① ~ ③ (생략)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제53조(양벌규정) | | |
|---------------------------|--|--|
| | | |
| | | |
| | | |
| <u>제51조, 제51조</u> | | |
| <u> </u> | | |
| | | |
| | | |
| | | |
| <u>_</u> | | |
| | | |
| | | |
| | | |
| · 제54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 | |
| 같음) | | |
| ④ 제3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 | | |
| 체공사 현장을 이탈한 자에게 | | |
| 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 | |
| <u>과한다.</u> | | |
| <u> </u> | | |
| | | |
| | | |
| | | |
| | | |
| | | |

| 7 =1 =1 .1 | н -1 | -) & -)) |
|------------|------|----------|
| 구성상이 | 부과• | 징수한다. |

-----.